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가 족 정 책 과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영길 의원 외 8인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의자: 김영길·김민성·김영태·박세채
안주찬·이상호·장세구·정지원
추은희 의원(9인)

1. 제안이유

구미시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수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출산축하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다. 산후조리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의4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나. 부서검토: 가족정책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
3. “첫만남이용권”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6. “신청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에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와 자녀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전출·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관외 전출 후 관내에 재전입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첫만남이용권) 시장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출산축하금) 시장은 신생아를 출생한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

일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2.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3. 출생일보다 늦게 구미시로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조산으로 출산하여 임신 40주 이내 날짜에 전입신고 처리된 경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 후 생후 1년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제8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의 순서대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출산축하금 지원절차) ①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3조제1항의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산후조리비) 시장은 신생아를 출생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1. 산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시에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또는 출산과정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산모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2.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 부담금
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을 위해 약국 등 이용 시 본인 부담금
4.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5. 그 밖에 산후조리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산후조리비 지원절차)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상세 지출증빙 자료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축하금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제8조 관련)

출생 순위별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4년 1월 1일 부터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150만원 이내
둘째 자녀	12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셋째 자녀	2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넷째 자녀	300만원 이내	400만원 이내
다섯째 자녀 이후	4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생략)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생략)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급아동에게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가족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주요 사항

- 목적과 정의(안 제1~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환수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9조)
-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13조)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 지원기준을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붙임)
 - *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은 기 시행 중이므로 비용추계 미작성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제10조)
-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 산모당 500천원 × 1,900명 = 950,000천원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소계(a)						
세출	○ 산후조리비	950	950	950	950	950	4,750
	소계(b)	950	950	950	950	950	4,750
□ 총 비용(a-b)		950	950	950	950	950	4,75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 비						
	도 비						
	시 비	950	950	950	950	950	4,750
	민 간						
	기 타						
	합 계						

5. 부대의견 : 향후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 연도별 세출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6. 작성자 :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 박건태 (☎480-652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후조리비 지원 : 950,000천원

• 산출기초 : 500,000원 × 1,900명 = 950,000천원

* 2023년(1~12월) 구미시 출생아수 1,892명, 2024년(1~7월) 1,118명